

2019년 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선발 계획 공고

2019년도 화물복지재단 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월 2일 화물복지재단 이사장

1. 신청자격

- 화물운송업 관련 화물자동차 운행 중 사망한 사업용 화물운전자의 유가족
- 사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경력이 있어야 함.

* 화물운송자격증(명), 유류복지카드 유류구매실적 등 확인

2. 생계지원금

사고내용	지원금액	비고
교통사고	500만원	화물차 운행 중 또는 상하차 작업 등 화물운송과 관련된 업무로 사망
그 밖의 사고	200만원	업무 중 불상의 원인으로 회사, 화물차 내에서의 사망 등

3. 신청 방법

- 하단의 제출서류(4번)를 우편으로 등기 제출(원본)
- 제출처(등기우편)
 - (우06144)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0, 13층
 - 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담당자 앞

4. 제출서류(각 1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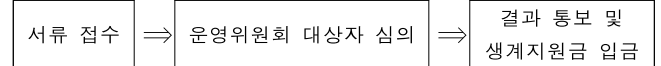
제출 서류		발 급 처	비 고
1) 교통사고생계지원사업 신청서		홈페이지	원 본
2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		홈페이지	원 본
3)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(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)		경찰서	원 본
4) 사망진단서		병원	원 본
5) 화물운송종사자격증(명)		교통안전공단/협회	사 본
6) 유류복지카드 유가보조금 할인내역서		해당 카드사(신한·국민·우리 등)	사 본
(또는) 고용사실 증빙서류		소속 운수회사(법인)	원 본
7) 가족관계증명서	택 1	주민센터	자녀 신청시(원본)
혼인관계증명서		주민센터	배우자 신청시(원본)
8) 통장		은 행	사본

* 고용사실 증빙서류는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발행 공신력 있는 서류

5. 신청 기간

- '19. 1. 2 ~ 수시 접수

6. 심사 및 선정 절차(2~3개월 소요)



7. 발표

-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
8. 유의 사항

- 사고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함.
- 신청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을 취소함.
- 사고 내용이 위법(음주운전, 무면허,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 등)으로 판명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.
-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
9. 문의

- 재단 사업국 : (02)761-0270, 761-0199(fax)
- 홈페이지 : www.fordrivers.or.kr